

CONTENTS

I. 투표일 전날에 해야 할 일

- | | |
|-------------------|----|
| 1. 투표용지 등 인수 및 보관 | 07 |
| 2. 투표소 설비 | 08 |

II. 투표개시 직전에 해야 할 일

- | | |
|-------------------------------|----|
| 1. 투표용지 및 투표함 운반·배치 | 13 |
| 2. 투표사무관계자 출석 확인 및 교육 | 14 |
| 3. 투표사무관계자 선서 | 15 |
| 4. 투표관리관 도장 등록 | 16 |
| 5. 투표함 및 기표소 이상 유무 검사, 투표함 봉인 | 17 |
| 6. 투표참관인 참관방법 안내 | 20 |

III. 투표 진행 방법

- | | |
|-----------------------|----|
| 1. 투표개시 선언 | 23 |
| 2. 선거인 본인 여부 확인 | 24 |
| 3. 일련번호지 절취 및 투표용지 교부 | 29 |
| 4. 기표 및 투표함 투입 | 30 |
| 5. 귀국투표 | 32 |
| 6. 투표자수 보고 | 34 |
| 7. 투표소 질서 유지 | 35 |

IV. 투표마감 및 개표소 이송

- | | |
|----------------------------------|----|
| 1. 투표마감 | 41 |
| 2. 투표지 투입구 봉쇄, 특수봉인지 부착·서명(성명기재) | 43 |
| 3. 투표록 작성 및 마감 보고 | 44 |
| 4. 투표관계서류 봉투 봉합·봉인 등 | 46 |
| 5. 투표함 등 이송 | 47 |
| 6. 투표함 및 투표관계서류 인계 | 48 |
| 7. 어르신·장애인 등 선거인 투표편의 지원 | 49 |

부록

- | | |
|----------------------|----|
| 1. 투표사무관계자 업무분담표(예시) | 55 |
| 2. 투표소 설비물품 점검표 | 58 |
| 3. 투표소 설비상황 점검표 | 61 |
| 4. 투표함 등의 인계할 품목 점검표 | 63 |
| 5. 투표록(작성예시) | 64 |

투표관리 이렇게 합니다

1

투표관리 준비

2

투표개시 직전에 할 일



- 선거일 전일 투표용지 수령
- 선거일 전일까지 투표소 설비



- 투표사무관계자 출석 확인 및 교육
- 투표관리관 도장 등록
- 투표함 및 기표소 이상 유무 검사



일려두기

위원회명은 다음과 같이 줄여서 표기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 구·시·군위원회
-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 읍·면·동위원회



3

> 투표개시 및 진행



- 06:00 투표개시 선언
- 신분증명서와 얼굴 대조 →
선거인명부에 성명 기재나 도장 또는 손도장 날인 →
투표용지 교부 → 기표 → 투표함에 투입

4

> 투표종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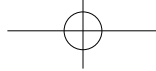
- 18:00 투표마감 선언
- 투표함 봉쇄, 특수봉인지 부착 · 성명기재 및
투표함 등 이송



투표일 전날에 해야 할 일



1. 투표용지 등 인수 및 보관
2. 투표소 설비



1

투표용지 등 인수 및 보관 (구·시·군위원회 ⇨ 읍·면·동위원회)

투표관리관 등 참석통보

- 읍·면·동위원회 간사는 위원 및 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 등 도착시간 이전에 모이도록 연락(정당추천위원은 빠짐없이 참석하도록 안내)
 - ※ 투표관리관은 행정담당사무원(또는 직무대행자)과 함께 참석
 - ※ 구·시·군위원회의 계획에 따라 읍·면·동위원회에서 투표용지 등을 직접 수령해 가는 경우에는 참석 일시 등을 미리 정하여 투표관리관, 행정담당사무원(또는 직무대행자), 정당추천위원에게 사전 안내

투표용지 등 인수

- 수송책임자로부터 투표용지 및 투표소 설비·운영에 필요한 물품 인수
 - ※ 투표용지 인수 시에는 정당추천위원, 간사·서기 및 투표관리관과 행정담당 사무원을 참여시켜 투표용지 봉인상태 이상 유무 확인
 - ※ 투표소 설비·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인수하고 점검표에 따라 이상 유무 확인

인계·인수서 작성

- 투표용지 등에 이상이 없는 때에는 수송책임자가 제시한 인계·인수서(2부)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읍·면·동위원회위원장이 성명 기재·날인
 - ※ 1부는 수송책임자에게 교부, 1부는 자체 보관

투표용지 등 보관

- 투표용지를 투표구별로 투표함 등 견고한 용기에 넣고 정당추천위원의 참여 하에 투표관리관의 도장으로 봉합·봉인 후 읍·면·동위원회(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사무실·숙직실 등에 보관
- 사전투표를 한 선거인이 표시된 선거인명부(사전투표기간만료일 후 2일까지 출력)는 정당추천위원 입회 하에 읍·면·동위원회위원장이 봉합·봉인 하여 금고 등에 보관
 - ※ 선거인명부 하단의 페이지 일련번호 및 선거인수 확인을 통해 정상출력 여부 확인

보관책임자 지정·배치

- 읍·면·동위원회위원장은 간사 또는 서기를 투표용지 보관책임자로 지정·배치
 - ※ 투표용지 등을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외의 장소에 보관할 경우에는 투표관리관(또는 행정담당사무원)을 보관책임자로 지정 가능
 - ※ 관할 지구대(파출소)에 협조 요청하여 보관장소를 순찰경비하게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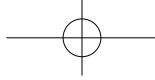
I. 투표일 전날에 해야 할 일

II. 투표개시 직전에 해야 할 일

III. 투표 진행 방법

IV. 투표마감 및 개표소 이동

부록



2 투표소 설비 요령



투표안내석

- 투표소 입구 또는 투표소 안의 적절한 장소에 책상과 의자 등을 설비

준비물

- 선거인명부 색인부
- 투표안내요원(투표사무원) 조끼



본인확인 하는 곳 (선거인명부 대조석)

- 책상과 의자는 선거인명부 분철 시에도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배치

준비물

- 선거인명부
- 볼펜 또는 사인펜
- 명부대조용 자 및 스탬프
- 휴지(물티슈)



투표용지 받는 곳 (투표용지 교부석)

- 일련번호지 투입함은 일련번호지를 직접 떼어내기 편리하도록 설치하고 접착테이프 등으로 고정

준비물

- 투표용지
- 투표관리관 도장 날인용 스탬프 (투표관리관 도장이 인주내장형인 경우 생략)
- 투표관리관 도장
- 일련번호지 투입함
- 접자형 투표보조용구
- 칼, 가위, 자

I. 투표일 전날에 해야 할 일

II. 투표개시 직전에 해야 할 일

III. 투표 진행 방법

IV. 투표마감 및 개표소 이동

부록

2020. 2. 16. 오후 10:33



투표진행기록식

- 투표관리관식(투표용지 교부식) 가까이 설치하여 행정 담당사무원이 투표진행 기록, 투표상황 보고 및 투표 관리관을 도울 수 있도록 설비

준비물

- 투표록
- 투표관계서류 투입봉투
- 투표관계 보고 서식
- 예비용 기표용구
- 어르신·장애인 등 선거인용 물품세트
- 투표관리매뉴얼
- 선거인 본인여부 확인서
- 투표확인증
- 투표참관인 교체 신고서
- 공개된 투표지 고무인
- 휴대전화기, 계산기 등
- 투표지 촬영사실 확인서
- 예비 투표함(필요 시)
- 사용한 투표보조용구 회수 봉투



안내표찰 등 부착

- 「투표소 방향표지」는 투표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투표소 주변 담장·벽면 등에 부착
- 「투표소 간판」은 투표소 입구 벽면에 부착
- 「투표절차안내문」 및 「어르신·장애인 등 투표편의 지원 안내문」은 선거인이 들어오면서 잘 볼 수 있도록 투표소 입구 벽면에 부착
- 「진행방향(바닥부착용), 나가는 곳(벽면용)」을 진행 순서에 따라 부착
- 우천 시에는 투표함 방습제를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소 입구에 「휴대이용깔판」, 「수건」, 「우산꽂이」 등을 비치하여 투표용지가 빗물에 젖지 않도록 유의
※ 특히 투표소 입구가 경사지는 등 우천시 미끄러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미끄럼 방지용 깔판 등을 사전에 구비
- (사안발생 시) 경력 등 허위 사실 또는 사생활 비방으로 인한 고발사실 공고문 게시
- (사안발생 시) 후보자 사퇴 등 안내문 게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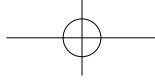
투표사무관계자 업무분담 및 교육

- 투표관리관은 투표사무원별 담당업무를 완전히 숙지 시켜 업무 착오가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 실시
※ 선거일 전일 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투표사무원에 대해서는 선거일 투표개시 전에 교육 실시
- ※ 투표사무관계자 담당업무(본 매뉴얼 55쪽) 참조

투표개시 직전에 해야 할 일



1. 투표용지 및 투표함 운반·배치
2. 투표사무관계자 출석 확인 및 교육
3. 투표사무관계자 선서
4. 투표관리관 도장 등록
5. 투표함 및 기표소 이상 유무 검사, 투표함 봉인
6. 투표참관인 참관방법 안내



1 투표용지 및 투표함 운반·배치 (선거일 05:00까지)

투표용지 등 투표소 보관

- 도서·산간오지 등 선거일 당일 투표용지 수송이 어려워 읍·면·동위원회가 선거일 전일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보관할 투표구를 결정한 경우 해당 투표관리관에게 그 내용 통지
- 해당 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보관에 지장이 없도록 보관 장소 확인, 함께 근무할 투표사무원 선정, 관할 지구대(파출소)와 비상연락망 구축 등 사전 준비 철저

투표용지 등 점검 후 투표소 이동

- 투표용지 운반관계자 확인 및 거리가 먼 경우 차량 준비
- 투표용지 보관상태 이상 유무 확인
- 투표소 설비물품 점검표에 따라 투표소에서 사용할 물품·서식 등 재차 확인
- 해당 투표소의 투표용지와 출력한 선거인명부 이상 유무 확인
※ 선거인명부 하단의 페이지 일련번호 및 선거인수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읍·면·동위원회에 보고 후 업무처리

투표용지 등 부서별 배치

- 투표용지를 투표용지 받는 곳에 비치
- 각 부서에서 사용할 서식·용품을 꺼내어 부서별로 배치

I. 투표일 전날에 해야 할 일

II. 투표개시 직전에 해야 할 일

III. 투표 진행 방법

IV. 투표마감 및 개표소 이동

부록

2 투표사무관계자 출석 확인 및 교육 (05:00부터 05:30)

출석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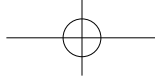
- 투표관리관은 행정담당사무원(또는 직무대행자)에게 투표사무원 및 투표참관인의 출석 확인 지시
- 행정담당사무원(또는 직무대행자)은 출석하지 않은 투표사무원 및 투표참관인에게 전화로 출석 독려

표지패용

- 투표관리관은 투표사무원 및 투표참관인의 출석을 확인한 후 표지를 나눠 주어 패용하게 하고, 지정된 부서 또는 좌석에 앉도록 안내

교육

- 선거일 전일에 실시한 투표소에서의 투표관리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투표사무원에게 담당업무에 대해 교육 실시
- 부서별 유의사항을 다시 한번 강조



3 투표사무관계자 선서 (05:30 정도)

- 투표관리관은 투표사무원을 투표관리관석 앞으로 모이게 하고, 행정담당사무원(또는 직무대행자)이 오른손을 들어 '선서'라고 외치면 투표사무원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



선서문

- 투표관리관 : 일찍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공정한 투표관리를 다짐하기 위해 선서를 하겠습니다. 행정담당사무원 ○○○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담당사무원 : [선서문 낭독]

선 서 문

"우리 ○○ (읍·면·동)계○투표소의 투표사무원은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투표를 관리함에 있어 헌법과 법규를 준수하고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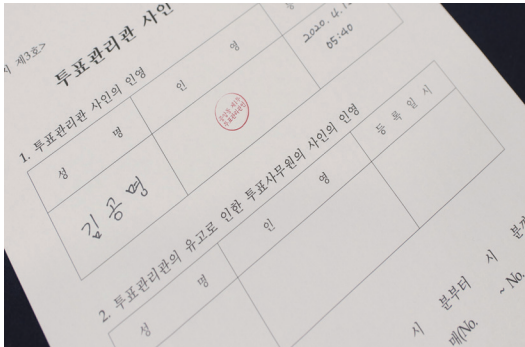
투표준비상황 보고



- 선서 종료 후 행정담당사무원(또는 직무대행자)은 투표준비 상황을 관할 읍·면·동위원회에 우선으로 보고
- 읍·면·동위원회는 선거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투표준비 완료상황을 05:40까지 보고

4 투표관리관 도장 등록 (투표개시 전까지)

도장 등록



투표관리관 사인 날인 인영대장
(투표록 별지 제3호)

성명	인영	등록일시
김OO	중앙동 제1투 투표관리관인	2020. 4. 15 05:40

- 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투표관리관의 도장인지 여부를 확인
- 투표관리관 도장을 투표록 <별지 제3호> 서식의 『투표관리관 사인 날인 인영대장』에 등록
 - ※ 투표관리관과 직무대행자는 개별 도장을 지참하여 등록된 도장이 훼손 등으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인영대장에 등록 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표록의 「투표진행 중의 특기사항」 10. 그 밖의 특기사항란에 관련 상황을 자세히 기록

도장 표지 부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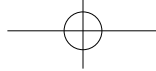


도장에 부착하는 등록 표지 양식



등록 제1호

- 등록된 도장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투표관리관 도장 윗부분에 부착
- 등록된 도장과 인영대장은 투표가 끝날 때까지 투표소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 없음에 유의



5 투표함 및 기표소 이상 유무 검사, 투표함 봉인 (투표개시 전까지)

투표함 이상 유무 검사 및 봉인



- 투표함 뚜껑을 열어 투표함 내·외의 이상 유무를 확인

※ 투표함 윗면에 부착된 투표함 관리번호(홀로그램 스티커)를 확인하고, 관리번호를 투표록(2. 사.)에 기재



- 투표함 뚜껑을 닫은 후 1회용 자물쇠로 투표함의 앞·뒤쪽을 잠금

※ 자물쇠의 '봉'자 부분을 열쇠고리 좌측에 대고 송곳 모양의 자물쇠를 우측에서 좌측방향으로 끼워서 잠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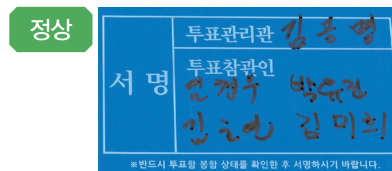
- 특수봉인지에 투표관리관과 정당·후보자 별로 신고한 투표참관인 각 1명이 서명 (성명 기재)한 다음 자물쇠(앞·뒤쪽) 위에 특수봉인지를 부착하여 봉인

※ 특수봉인지를 부착한 다음 서명하는 것도 가능
 ※ 투표함의 봉쇄·봉인에 참여한 사람은 투표록 (2.바.)에 기재



- 투표소명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

〈 특수봉인지 부착 시 주의사항 〉



※ 특수봉인지는 부착 후 떼면 그 기능이 상실되어 재사용이 불가하므로 주의해서 부착

투표함 등의 이상 유무 검사 예문

- 투표관리관 : “먼저, 투표참관인께서는 투표함 봉쇄·봉인과정을 촬영할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그럼 투표함 검사 및 봉쇄·봉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함 윗면에 부착된 관리번호(홀로그램스티커)를 확인한 후] 2020년 4월 15일
○○○선거 ○○동 제○투표소에서 사용할 투표함 관리번호는○○○○-○○○○입니다.
투표사무원 여러분께서는 투표함 안팎의 이상 유무를 검사하여 주시고 참관인께서는
검사 과정을 참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습니까?”
- ※ 다만, 투표개시시각까지 투표참관인이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초로 투표하러
온 선거인으로 하여금 참관하여 성명을 기재하거나 도장을 찍게 하며, 그 상황을
투표록에 기재
- 투표사무원 · 참관인 : [이상 유무 답변]
- 투표관리관 : “이상이 없으면 투표함을 봉쇄하고 특수봉인지에 성명을 기재하거나 도장을 찍은 후
봉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사무원은 투표함의 뚜껑을 닫은 후 1회용 자물쇠로 투표함
앞·뒤쪽을 봉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봉쇄가 끝난 후) 후보자별 참관인 한 분씩
나오셔서 특수봉인지에 저와 함께 성명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명 기재가 끝난 후 특수봉인지를 자물쇠 부분에 붙여 투표함 봉인)
- ※ 투표함 관리번호가 기재된 홀로그램스티커 확인
- ※ 투표함 앞·뒤쪽 일회용 자물쇠 봉쇄·봉인 시간에 참여한 정당·후보자별
참관인이 각각 1명인 경우 해당 참관인이 모두 특수봉인지에 성명을 기재하게
하고, 정당·후보자별 참관인이 2명인 경우 투표관리관이 특수봉인지에 성명을
기재할 참관인 1명을 지정할 수 있음(성명 기재한 참관인은 투표록 <별지 2호>
서식 비고 란에 각각 “지정”이라고 기재).
- ※ 성명 기재하는 것을 거부하는 참관인은 투표록의 「투표진행 중의 특기사항」 8.
투표함의 봉쇄·봉인상황에 기록



기표소 이상 유무 검사



- 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기표소 내 · 외의 이상 유무를 확인
- 기표용구(특수형 기표용구 포함)의 기표 상태를 검사
 - ※ 기표판에 고정 부착(특수형 기표용구 제외) 하고 기표용구 뚜껑을 연 후 뚜껑은 행정담당 사무원이 회수하여 별도로 보관

기표소 검사 시 유의사항

- 기표소 내부를 살펴 낙서나 표시물 부착여부를 확인
 - ※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수시로 확인
- 기표용구 테두리에 인주가 묻었을 경우 휴지로 깨끗이 닦아냄.
 - ※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기표용구 이상유무(파손 · 마모 · 인주번짐)를 수시로 확인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교체
 - ※ 기표소 내에는 기표용구 외에 다른 인주 · 도장 등의 비치금지(기표용구가 흐리다고 인주를 비치하지 않음)

기표소 이상유무 검사 예문

- 투표관리관 : “기표소 내외의 이상 유무를 검사하겠습니다. 투표사무원 여러분께서는 기표용구의 상태 및 기표소 내외의 이상 유무를 검사하여 주시고, 참관인께서는 검사과정을 참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습니까?”
- 투표사무원 · 참관인 : [이상 유무 답변]
- 투표관리관 : “이상이 없으므로 잠시 후에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6 투표참관인 참관방법 안내 (투표개시 전까지)

교육방법

- 투표관리관은 투표참관인을 투표참관인석에 모이게 하여 투표참관 방법, 투표참관인이 할 수 있는 일, 투표참관인이 지켜야 할 일 등을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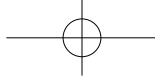
투표함 이송 시 동반할 투표참관인 선정

- 투표마감 후 개표소까지 투표함 등 이송에 함께 할 투표참관인을 미리 정당·후보자별로 각 1명씩 지정

투표참관 방법

- 투표관리관은 신고된 투표참관인 모두를 동시에 참관하게 하되, 원활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투표참관인을 교대로 참관하게 할 수 있음.
- 교대 참관을 하는 경우에는 정당·후보자별로 2분의 1씩 교대하여 참관하게 함.
- 투표관리관 및 투표사무원은 투표관리 업무를 투표참관인에게 맡길 수 없으며, 투표소에는 항상 투표참관인이 있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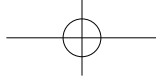


투표참관인이 할 수 있는 일

- 투표개시 전에 투표함 및 기표소 내·외의 이상 유무 검사 참관
- 투표개시 전 정당·후보자별 투표참관인 각 1명은 투표관리관과 함께 투표함 앞·뒤쪽의 일회용 자물쇠 봉쇄 후 부착하는 특수봉인지에 서명(성명 기재)
※ 투표참관인이 투표함의 봉쇄·봉인 과정을 촬영하는 것은 가능
- 선거인에 대한 본인 여부 확인과정 참관
- 투표용지 교부상황과 투표상황 참관
- 투표간섭 또는 부정투표, 그 밖에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 발견 시 투표관리관에게 이의제기 및 시정 요구
- 투표소 안에서 사고발생 시 그 상황 촬영
- 투표종료 후 투표함 투입구의 잠금핀으로 봉쇄·봉인 과정 참관
- 투표종료 후 정당·후보자별 투표참관인 각 1명은 투표함 투입구의 잠금핀 봉쇄 후 투표관리관과 함께 투표함 투입구 특수봉인지에 서명(성명 기재)
※ 투표참관인이 투표함의 봉쇄·봉인 과정을 촬영하는 것은 가능
- 투표함 등의 개표소 이송 시 동반
- 임시기표소 운용 시 참관

투표참관인이 지켜야 할 일

- 투표참관인 표지는 잘 보이도록 목에 걸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할 수 없음.
- 투표참관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음.
 - 참관 중 선거인에게 질문하는 행위
 - 투표 또는 투표사무를 방해·간섭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행을 하는 행위
 - 선거인명부나 투표용지를 만지는 등 투표진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
 - 그 밖에 투표에 영향을 주는 행위
- 투표참관인은 투표소의 질서유지에 협력
- 투표참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참관을 거부하거나 그 직을 사임할 수 없음.



투표 진행 방법



1. 투표개시 선언
2. 선거인 본인 여부 확인
3. 일련번호지 절취 및 투표용지 교부
4. 기표 및 투표함 투입
5. 귀국투표
6. 투표자수 보고
7. 투표소 질서 유지



1 투표개시 선언 (06:00 정각)



투표개시 선언 준비 (05:50 정도)

- 투표관리관은 정확한 투표개시를 위하여 행정담당사무원(또는 직무대행자)에게 휴대전화기 등을 통해 시간을 확인하도록 하고, 투표개시 선언을 준비



투표개시 선언

- 투표관리관은 오전 6시 정각에 투표개시를 선언
※ 투표개시 시각은 법정시각이므로 반드시 준수

투표개시 선언 예문

- 투표관리관 : 지금부터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읍·면·동) 제○투표소의 투표를 개시하겠습니다.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을 투표소 안으로 들어오게 하십시오.

2 선거인 본인 여부 확인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확인

- 먼저 선거인에게 선거인명부 등재번호를 물어보고, 모르는 경우 도로명 및 건물번호 등 주소로 해당 선거인을 확인



신분증명서 제시 요구

- 선거인에게 신분증명서 제시를 요구
- 신분증명서를 가지고 오지 않은 경우 투표할 수 없음을 설명하고 신분증명서를 가지고 오도록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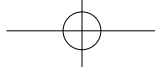


본인 여부 대조 · 확인

- 선거인명부에서 해당 선거인란을 찾아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등 기재사항과 신분증명서의 기재내용을 대조
- 신분증명서의 사진과 얼굴을 대조, 본인 여부를 확인
 - ※ 선거인명부에 선거인이 없을 경우 해당 투표구가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구 · 시 · 군위원회 보고 후 그 지시에 따라 업무처리
 - ※ 선거인명부의 “성명”란에 “동명이인”이 기재되어 있는 선거인의 경우에는 생년월일 · 주소 등을 다시 확인하여 다른 사람의 “투표용지 수령인”란에 성명을 기재하거나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인정되는 신분증명서 종류

- 주민등록증 · 여권 · 운전면허증 · 공무원증 · 국가유공자증 · 장애인복지카드 · 국가공인자격증
-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 학생증(사립학교 포함) · 국가기관 또는 학교에서 발급한 모바일 신분증, 군부대가 기록관리하는 병적기록부, 복무기록카드, 생활기록부 등도 본인 여부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으로 봄.
-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사진이 첨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또는 이들 기관이 기록 · 관리하는 것으로 사진이 첨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지 않은 선거인은 투표할 수 없음.
 - ※ 위의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인정하지 않음.



선거인명부에 성명을 기재하거나 도장 또는 손도장 날인

- 본인임이 확인되면 선거인명부의 “투표용지 수령인(가)”란에 성명을 기재하거나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게 하되, 선거인명부대조용 ‘자’를 활용하여 다른 선거인란에 하지 않도록 유의



등재 번호	주소	세대주	성별	생년월일	성명	투표용지 수령인		비고
						(가)	(나)	
1	중앙동...	세	남	67.04.05.	김OO			
2	중앙동...	세	남	75.11.10.	김OO	사전투표자 2020. 4. 10 명륜동		

※ 성명을 기재하는 경우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성과 이름을 정자로 적도록 하고, 선거인이 선거인명부에 도장을 찍은 경우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으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안내

※ 사전투표자는 “투표용지 수령인(가)”에 표시되므로 반드시 확인하고, 사전투표한 사람에게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음을 안내(본 매뉴얼 27쪽 참조)

- 신분증명서를 돌려준 다음 투표용지 받는 곳으로 가도록 안내

※ 선거인명부의 ‘비고’란에 일부 선거의 선거권만 있는 것으로 기재된 사람에게는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 교부 안내문 카드’를 교부함. 이 경우 ‘투표용지 교부 안내문 카드’를 교부받은 선거인에게는 투표사무원이 투표용지 교부석에서 해당 선거인이 투표용지를 받을 때까지 동행하여 안내하는 등 다른 선거의 투표용지가 교부되지 않도록 주의함.

투표용지 교부 안내문(예시)

- ○○선거의 선거권이 있습니다.
- 이 카드를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용지 교부자에게 제시하고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를 교부받으십시오.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거소투표신고인이 투표하러 온 경우 처리 방법

1. 거소투표용지를 송부받지 못한 선거인(거소투표신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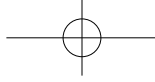
- 선거인명부 비교란에 ‘거소투표자’라고 표기된 사람 중 허위신고 또는 반송 등의 사유로 거소투표를 하지 못한 사람이 투표하러 온 때에는
- 구·시·군위원회에서 통지받은 “거소투표용지 미발송·반송자 명단”을 대조·확인하여 일치하면 신분 확인을 거쳐 투표하도록 안내
- 통보받은 명단이 없는 경우에는 구·시·군위원회에 전화로 확인한 후 신분 확인을 거쳐 투표하도록 하고,
- 행정담당사무원(또는 직무대행자)이 투표록의 「투표진행 중의 특기사항」 3. 거소투표용지 미발송·반송자 및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고 투표한 사람란에 기재

2. 거소투표용지를 송부 받았으나 거소투표를 하지 못한 선거인(거소투표신고인)

- 선거인명부 비교란에 ‘거소투표자’라고 표기된 사람 중 거소투표용지를 받았으나 거소투표를 하지 못한 사람이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모두 가지고 투표하러 온 때에는
- 투표관리관이 해당 선거인으로부터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받아 회송용봉투 주소 라벨에 기재된 투표구명, 선거인명부 등재번호를 선거인명부에 기재된 내용과 대조하여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으로 확인되면 선거인이 제시한 신분증명서로 본인 확인을 거쳐 정상적인 투표 절차에 따라 투표하도록 안내

〈거소투표신고인이 미리 기표하여 온 거소투표지를 가지고 온 때의 처리〉

- 투표관리관은 거소투표용지에 미리 기표하여 왔는지 여부를 구두로 확인
- 선거인이 거소투표용지에 미리 기표하여 온 때에는 해당 투표지를 반납받지 않고 거소투표 방법으로 투표할 수 있음을 안내
- 다만, 일부 거소투표용지만 미리 기표하여 온 때에는 모두 제출받아 “거소투표 선거일 회수” 봉투에 넣어 보관하고, 해당 선거인에게 미리 기표하지 아니한 선거의 거소투표용지와 동일한 종류의 투표용지만 교부
 - ※ 미리 기표하여 온 투표지를 반납 받은 경우 해당 선거의 투표지를 교부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함.
 - ※ 이 경우 미리 기표한 거소투표지는 기권처리됨을 안내하되, 미리 기표한 선거의 투표용지를 교부하지 않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인의 회송용봉투와 거소투표용지(이미 기표한 거소투표지 포함)를 반납 받지 않고 거소투표 방법으로 투표할 수 있음을 안내
- 일부 투표용지만 반납한 선거인이 투표지를 투표함에 투입하는 때에는 투표함담당사무원이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미리 기표한 투표지의 투입 여부를 확인
 - ※ 해당 선거인이 투표를 모두 마칠 때까지 투표사무원이 동행하여 안내함.
- 행정담당사무원(또는 직무대행자)은 거소투표신고인의 투표상황을 투표록의 「투표진행 중의 특기사항」 3. 거소투표용지 미발송·반송자 및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고 투표한 사람란에 기재하고, 투표관리관은 반납받은 거소투표용지를 해당 선거인이 반납한 회송용봉투에 넣어 “거소투표 선거일 회수 봉투”에 별도로 보관하고 구·시·군위원회에 인계



선거인명부에 사전투표자로 기재된 선거인이 투표하러 온 경우 처리 방법

- 투표관리관이 선거인명부에 기재된 사전투표소·일자 등을 선거인에게 안내하여 투표할 수 없음을 안내
- 선거인이 사전투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구·시·군위원회에 그 사항 및 선거인의 인적 사항(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등)을 유선 보고하고, 해당 사항을 투표록의 「투표진행중의 특기사항」 10. 그 밖의 특기사항에 기재한 후 구·시·군위원회의 지휘에 따라 업무처리

선거인명부에 없는 선거인이 투표하러 온 경우 처리 방법 (귀국투표는 본 매뉴얼 32쪽 참조)

선거인명부 등재결정 통지서를 지참한 선거인

- 선거인이 제시한 “선거인명부 등재결정 통지서”의 기재내용이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하도록 결정된 선거인인지 여부를 확인
-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구·시·군위원회에 전화로 “선거인명부 등재결정 통지서”의 기재내용을 확인 받은 후 선거인명부 맨 끝란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등의 기재 사항을 기록하고 본인 여부 확인절차를 거쳐 투표하도록 안내
- 행정담당사무원(또는 직무대행자)에게 투표록의 「투표진행 중의 특기사항」 2. 선거인명부 등재 결정서에 의하여 투표한 사람란에 기재

착오로 선거인명부에 국외부재자신고인으로 등재된 선거인

- 투표관리관은 중앙선거위 선거2과(02-504-5354)에 보고하고, 중앙선거위 직원이 해당 선거인과 통화할 수 있도록 조치
- 중앙선거위에서 착오등재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여 투표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그 내용을 투표록에 기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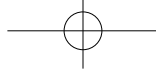
예시 2020. 4. 15. 13:00 홍길동(1974. 10. 16. 남) 경기도 과천시 00동 제0투표소 등재번호 00번 선거인은 착오로 선거인명부에 국외부재자 신고인으로 등재되었으나 중앙선거위 결정에 따라 투표하게 함.

선거권자 유형별(선거인명부 비교란 기재) 투표용지 교부방법
 [지방선거는 동시선거(재보궐선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며, 아래 예시는 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로 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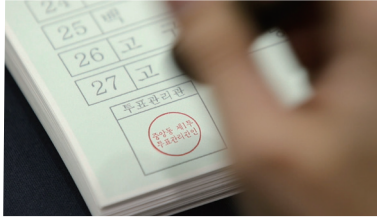
선거권자 유형별		선거인명부 비교란 기재사항	투표용지 교부		
			국 선		지방 선거
			지역구	비례	
거소투표신고인 명부에 오른 사람	—	거소투표자	×	×	×
	거소투표용지 미발송자 및 반송자로서 투표소에 온 사람	거소투표자 (미발송자)(반송자)	○	○	○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에게 반납한 사람 ※ 투표소에서 선거인명부 비교란에 그 사실을 기재	거소투표자 (회송용봉투 등 반납 후 투표)	○	○	○
선상투표신고인 명 부에 오른 사람	귀국투표신고 없이 투표소에 온 사람	선상투표자	×	×	○
	귀국투표신고 후 투표소에 온 사람	선상투표자 (귀국투표자)	○	○	○
국외부재자신고인 명부에 오른 사람	귀국투표신고 없이 투표소에 온 사람 ☞ 일반 주민등록자 기준	국외부재자	×	×	○
	귀국투표신고 후 투표소에 온 사람 ☞ 일반 주민등록자 기준	국외부재자, (귀국투표자)	○	○	○
	귀국투표신고 없이 투표소에 온 사람 ☞ 재외국민(주민등록 - 3개월이상) 기준	비례대표 · 기초단체장선거권자 (국외부재자)	×	×	○
	귀국투표신고 없이 투표소에 온 사람 ☞ 재외국민(주민등록 - 3개월미만) 기준	비례대표선거권자 (국외부재자)	×	×	×
[A · B 기초단체장 동시선거와 전출입이 있는 경우] A지자체 국외 부재자신고인 명부에 오른 사람 이 B지자체 전출 (2. 16 ~ 3. 24)	귀국투표신고 없이 투표소에 온 사람 ☞ A 지자체(일반 주민등록자) 기준	지역구 · 비례대표선거권자 (국외부재자, 전출자)	×	×	×
	귀국투표신고 후 투표소에 온 사람 ☞ A 지자체(일반 주민등록자) 기준	지역구 · 비례대표선거권자 (국외부재자, 전출자, 귀국투표자)	○	○	×
	귀국투표신고 없이 투표소에 온 사람 ☞ A 지자체(재외국민-3개월이상) 기준	비례대표선거권자 (국외부재자, 전출자)	×	×	×
	귀국투표신고 후 투표소에 온 사람 ☞ A 지자체(재외국민-3개월이상) 기준	비례대표선거권자 (국외부재자, 전출자, 귀국투표자)	×	○	×
	투표소에 온 사람(귀국투표 신고여부 무관) ☞ B 지자체(일반 주민등록자, 재외국민 3개월 이상) 기준	기초단체장 선거권자 (국외부재자, 전입자)	×	×	○
외국인		외국인	×	×	○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 3개월 미만인 사람	—	비례대표선거권자	×	○	×
	거소투표신고인 명부에 오른 사람	비례대표선거권자 (거소투표자)	×	×	×
	선상투표신고인 명부에 오른 사람	비례대표선거권자 (선상투표자)	×	×	×
	국외부재자신고인 명부에 오른 사람	비례대표선거권자 (국외부재자)	×	×	×

※ 선거인명부 비교란에 국외부재자 · 선상투표자로 기재된 경우 구 · 시 · 군위원회에서 별도 통보한 귀국투표 신고자 명단 확인 없이 투표용지를 교부할 수 없음에 유의함.(지방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경우 가능)

※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 3개월 미만인 사람이 귀국투표신고를 한 경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투표용지만 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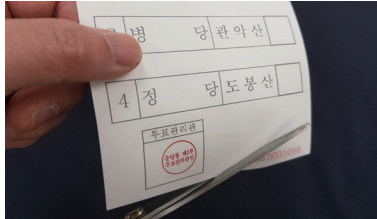


3 일련번호지 절취 및 투표용지 교부



투표관리관 도장 날인

-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용지교부 보조사무원은 선거별 100매 이내의 투표용지를 꺼내 투표록에 등록된 투표관리관 도장을 미리 날인



일련번호지 일부 자르기

- 투표관리관 도장이 찍힌 투표용지를 상하가 뒤바뀌지 않게 정리
- 가위로 투표용지의 일련번호지 절취선을 따라 2/3 정도를 미리 자른 후 일련번호 순서대로 정리

※ 투표용지 일련번호지는 투표용지 교부 시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직접 떼어서 교부하여야 하므로, 절취선 전체를 미리 잘라 놓지 않도록 유의



번호지 떼어 넣기

- 투표용지 일련번호지는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용지교부 보조사무원이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직접 떼어서 번호지함에 투입



투표용지 교부 (투표관리관 도장 날인 재확인)

- 선거인에게 교부하기 전에 투표관리관 도장이 찍혀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
 - 선거인에게 지역구·비례대표 투표용지를 각 1매씩 교부
- ※ 일부선거의 선거권만 있는 사람으로서 '투표용지 교부 안내문' 카드를 제시한 선거인에게는 선거권이 없는 선거의 투표용지를 교부하지 않도록 유의



기표소로 안내

- 선거인에게 비어 있는 기표소로 가도록 안내하고 먼저 온 선거인이 기표 중일 때에는 기표소 내부를 볼 수 없도록 '선거인 대기선' 뒤에서 기다리도록 안내

I. 투표일 전날에 해야 할 일

II. 투표개시 직전에 해야 할 일

III. 투표 진행 방법

IV. 투표마감 및 개표소 이동

부록

투표용지 교부 시 유의사항

- 투표용지 교부 및 관리방법
 - 읍·면·동위원회로부터 수령한 일련번호 순으로 교부
 - 교부 중 오·훼손된 투표용지는 교부하지 않고 맨 뒤로 돌려 놓은 후 그 상황을 투표록의 「투표진행 중의 특기사항」 10. 그 밖의 특기사항에 기재
 - 투표용지는 투표관리관과 투표용지교부 보조사무원 이외에는 누구도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일련번호지를 자르다 투표용지가 훼손된 경우
 - 선거인에게 교부하지 않도록 하고 맨 뒤로 돌려 놓은 후 그 상황을 투표록의 「투표진행 중의 특기사항」 10. 그 밖의 특기사항에 기재
-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선거인이 자신의 책임사유로 오·훼손한 경우
 - 재교부할 수 없으며, 그 상황을 투표록의 「투표진행 중의 특기사항」 10. 그 밖의 특기사항에 기재
- 착오로 같은 선거의 투표용지를 2매 이상 교부한 것을 발견한 경우
 - 선거인으로 하여금 1매만을 기표하여 투표함에 투입하게 하고, 나머지 투표지는 회수하여 오·훼손된 투표용지로 간주하고 잔여투표용지로 보관하되, 그 상황을 투표록의 「투표진행 중의 특기사항」 10. 그 밖의 특기사항에 기재
- 투표관리관이 착오로 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 도장을 날인하지 않은 상태로 선거인에게 교부한 경우
 - 교부시간, 매수, 사유 등을 투표록의 「투표진행 중의 특기사항」 10. 그 밖의 특기사항에 기재

4 기표 및 투표함 투입



기표안내

- 선거별 투표용지에 기표용구로 한 명의 후보자(정당)를 선택하여 기표한 후 기표한 내용이 보이지 않게 접어서 기표소를 나오도록 안내
 - ※ 시각장애 또는 신체장애로 자신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점자형 투표보조용구를 사용하거나 그 가족(1명도 가능함)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가능
 - ※ 위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표소 안에 2명(미취학 어린이 제외) 이상이 동시 출입금지



투표지의 투표함 투입 및 퇴소

- 기표한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고, 투표소를 나가도록 안내

I. 투표일 전날에 해야 할 일

II. 투표개시 직전에 해야 할 일

III. 투표 진행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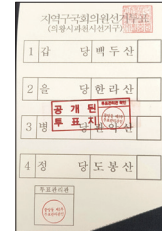
IV. 투표마감 및 개표소 이동

부록

공개된 투표지 처리요령

○ 공개된 투표지 처리요령

- 투표관리관은 선거인의 고의 또는 과실여부 등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의로 투표지를 공개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해당 선거인으로부터 그 투표지를 회수하여 투표지 앞면의 중앙등 식별이용이한 곳에 “공개된 투표지” 고무인을 찍고 자신의 도장을 찍거나 성명을 기재한 다음 투표함에 투입하고 그 상황을 투표록의 「투표진행 중의 특기사항」 7. 공개된 투표지 처리상황란에 기재



※ 선거인이 기표를 하지 않고 기표소에 놓고 간 투표지의 경우에도 위 공개된 투표지 처리요령에 따름

○ 선거인이 투표용지를 받은 후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지 않고 나가려고 하거나 나간 경우

〈투표소 밖으로 나가려는 경우〉

-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을 것을 권유하고 이에 불응하면 투표지를 회수하여 위의 공개된 투표지 처리요령에 따라 조치한 후 그 상황을 투표록의 「투표진행 중의 특기사항」 10. 그 밖의 특기사항에 기재

〈투표소 밖으로 나간 경우〉

- 추후 조치 등에 필요한 발생일시·선거인명부등재번호·성명·사유 등을 투표록에 기재하고 즉시 관할 읍·면·동위원회에 사건·사고 발생 보고

제 3 호

투표확인증

명부등재번호 : 159

성명 : 김 00

생년월일 : 92. 1. 25

투표일 : 20. 4. 15.

위 사항은 2020년 4월 15일 실시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투표에 참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0. 4. 15.

투표관리관 김 00 (인)

선거관리위원회원장 (인)

주) 구 시군위원회에서 발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시·군 위원회원장이 확인

투표확인증 발급

-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선거인이 투표확인증 발급을 요청할 때에는 투표진행기록석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배부한 투표확인증 교부
-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한 선거인이 아닌 사람에게 발급하지 않도록 유의

5 귀국투표

개요

- 재외·선상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재외·선상투표선거인등은 재외·선상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또는 최종 주소지(최종 주소지가 없는 사람은 등록기준지를 말함)를 관할하는 구·시·군위원회에 신고한 후 선거일에 해당 위원회가 지정하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음.

투표방법

- 귀국투표자는 본인여부확인서에서 신분증명서 제시를 요구하여 본인여부를 대조·확인한 후 투표함.

※ 일반선거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본인여부 대조·확인

국외부재자신고자 및 선상투표신고인 투표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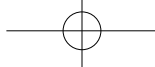
- 선거인명부 '비고'란의 "귀국투표자"로 기재된 선거인은 구·시·군위원회에서 송부한 명단과 대조하여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자인지 여부를 확인
- 정당한 귀국투표신고를 거친 귀국투표자인 경우 일반 선거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하게 하고 투표상황을 투표록의 『투표진행 중의 특기사항』 4. 귀국투표자란에 기재

▶ 구·시·군위원회에서 송부한 명단

구분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주민등록지·국내 최종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투표소명	비고
☐ 국외부재자 ☐ 재외선거인 ☐ 선상투표자	정○○	73.01.11	중앙동..	1	중앙동 제2투표소	

▶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	주소	세대주	성별	생년월일	성명	투표용지 수령		비고
						(가)	(나)	
1	중앙동..	세	남	73.01.11	정○○			국외부재자 (귀국투표자)

**‘비고’란에 ‘국외부재자’만 기재된 사람의 귀국투표 처리시 유의사항**

- 구·시·군위원회의 통보사항(귀국투표자 명단 등)을 확인 후 명단을 이미 통보받은 사람은 비고란 여백에 “귀국투표자”라고 기재 후 투표하게 함.
 - (1) 신고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관할 구·시·군위원회에 귀국투표 신고절차를 마친 후 투표가 가능함을 알리고,
 - (2) 귀국투표를 신고한 사람의 경우에는 관할 구·시·군위원회에 문의·확인하여 그 지시에 따름.
- ※ (2)의 경우 구·시·군위원회는 귀국투표 신고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투표관리관(읍·면·동위원회 포함)에 즉시 통보하여 해당 선거인이 투표할 수 있도록 함(⇒ 선거인명부 해당 선거인의 비고란에는 ‘귀국투표자’로 기재하고 투표록의 『투표진행 중의 특기사항』 4. 귀국투표자란에 그 사실을 기재).
- ※ 귀국투표 미신고자가 투표하지 않도록 유의함.

→ 처리예시

등재번호	주소	세대주	성별	생년월일	성명	투표용지 수령		비고
						(가)	(나)	
1	중앙동..	세	남	67.04.05	김○○			국외부재자 (귀국투표자)

재외선거인 투표방법

- 읍·면·동위원회가 선거인명부 맨 끝란에 기재한 재외선거인은 일반 선거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서명(날인 또는 무인 포함)하도록 한 후 투표하게 하고 투표상황을 투표록의 『투표진행 중의 특기사항』 4. 귀국투표자란에 기재
- ※ 재외선거인에게는 비례대표 투표용지만 교부

선거인명부에 올라있지 아니한 재외선거인의 귀국투표 처리시 유의사항

- 구·시·군위원회의 통보사항(귀국투표자 명단 등)을 확인 후 명단을 통보받은 사람은 투표관리관이 선거인명부의 맨 끝란에 등재번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등을 기재하고 투표하게 함.
- 구·시·군위원회로부터 통보사항을 받지 않은 사람은 위 「‘비고’란에 “국외부재자”만 기재된 사람의 귀국투표 처리시 유의사항과 같음.

6 투표자수 보고



투표자수 보고

- 행정담당사무원(또는 직무대행자)은 지정된 매 보고 시각에 맞추어 투표자수를 전화로 읍·면·동위원회(간사 또는 서기)에 보고

※ 보고시각 : 07시, 08시, 09시, 10시, 11시, 12시, 13시, 14시, 15시, 16시, 17시, 18시 20분

※ 투표자수 누락은 투·개표 불신으로 이어지므로 투표진행상황을 정확히 보고

※ 투표마감 후 잠정투표수는 투표록에 기재된 투표용지교부수로 공개되는 바, 선거인명부의 '투표용지 수령인'란에 성명기재 등 표시가 된 선거인수와 잔여투표용지 매수를 확인한 후 보고

투표자수 산정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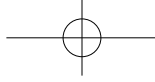
- 투표자수는 선거인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선거인 중 투표소에서 투표한 사람을 말하며
- 투표자수 계산은 보고시점을 기준으로 그때까지 선거인에게 교부한 투표용지교부수로 계산함.
※ 투표자수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기준으로 산정함.

투표자수 산정 예시 - 09시 현재

- ① 09:00 현재 선거인에게 교부 후 남은 투표용지 중 제일 앞 번호 → 003701번
- ② 수령한 투표용지 일련번호 중(003401부터 004400까지) 그 순위가 가장 먼저인 일련번호
→ 003401번
- ③ 투표자수(투표용지교부수) → 003701-003401=300명

투표자수 산정 시 유의사항

- 투표자수는 투표용지교부수와 일치해야 함.
→ 오·훼손되어 맨 뒤로 돌려놓은 투표용지, 투표를 거부하여 투표용지를 회수한 선거인이 있는 경우에는 투표자수에서 그 수만큼을 빼고 계산
- 결정서를 지참하여 투표한 사람, 거소투표신고인 중 거소투표용지 미발송 또는 반송을 사유로 투표소에 와서 투표한 사람, 거소투표용지를 송부 받았으나 투표소에 와서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고 투표한 사람의 수는 투표자수에 합산



7 투표소 질서 유지

투표소 질서유지

-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은 투표소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투표관리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정복을 한 경찰 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협조를 요구
- 투표소에 들어간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투표 관리관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질서가 회복되거나 투표관리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퇴거

기표 전 투표용지 촬영사실을 발견한 경우

- 촬영경위 등을 확인한 후 위반행위 예방 조치(기표된 투표지 촬영불가) 및 관련 규정을 안내
- 선거인에게 정상적으로 투표하게 하고, 투표록의 「투표진행 중의 특기사항」 10. 그 밖의 특기사항에 촬영동기, 처리상황 등을 상세히 기재

기표된 투표지 촬영사실을 발견한 경우(삭제한 경우 포함)

① 투표지가 공개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 투표지를 촬영한 후 촬영물(또는 투표지)을 직접적으로 공개한 경우 본인의 동의 하에 스스로 삭제하도록 조치한 후 투표지 촬영사실 확인서를 징구하고 투표록에 첨부
 - 선거인의 투표지는 ‘공개된 투표지 처리요령’(본 매뉴얼 31쪽)에 따라 처리하고, 투표록의 「투표진행 중의 특기사항」 7. 공개된 투표지 처리상황, 9.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선거인 처리상황에 투표지 공개 여부, 촬영동기, 처리상황 등을 상세히 기재
- ※ 해당 투표관리관은 즉시 구·시·군위원회에 연락하고 구·시·군위원회는 촬영경위 등을 조사하여 위반행위 경중에 따라 관련자 등을 조치

② 투표지가 공개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투표지를 촬영하였으나 촬영물(또는 투표지)를 직접적으로 공개하지 않은 경우 본인의 동의 하에 스스로 삭제하도록 조치한 후 투표지 촬영사실 확인서를 징구하고 투표록에 첨부

투표지를 촬영한 경우 처리요령

I. 투표일 전날에 해야 할 일

II. 투표개시 직전에 해야 할 일

III. 투표 진행 방법

IV. 투표마감 및 개표소 이동

부록





투표소 출입 제한 및 통제

- 투표관리관은 투표소에 출입할 수 없는 자가 투표소에 출입하는 일이 없도록 투표 안내 사무원에게 출입을 통제하도록 지시
- 특히 후보자나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역유지 등이 격려를 명목으로 투표소 입구에서 커피·음료 등을 제공할 수 없으며, 투표소에도 출입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
- 다음 사람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에 출입불가
 - ① 투표하려는 선거인
 - ② 투표관리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투표사무원 및 투표참관인
 - ③ 투표소 질서유지를 위하여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으로부터 원조요구를 받은 정복을 한 경찰 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
 - ④ 초등학교 이하의 어린이와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의 가족 또는 그가 지명한 2명
 - ※ 위의 경우(초등학교인 어린이는 제외함) 외에는 같은 기표소 안에 2명 이상이 동시에 들어갈 수 없음.
 - ⑤ 언론기관의 취재·보도 요원이 투표상황을 취재·보도하는 경우 및 상급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기록사진요원 등의 경우에는 투표진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해당 투표관리관의 허가를 받아 출입가능

참고 투표소 내 반려동물 출입 제한

- 투표소 내 반려동물 동반은 원칙적으로 금지(시각장애인 안내견은 출입 허용)
- 다만, 질서유지 및 선거인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투표관리관이 예외적으로 허용 가능
- ※ 동반이 허용된 경우에도 다른 선거인이 위화감을 느끼지 않도록 품에 안도록 안내(품에 안을 수 없을 정도로 큰 반려동물은 동반불가)

〈투표소 등의 출입제한 (공직선거법 제163조) 관련 벌칙〉

- (공직선거법 제256조) 투표소에 출입할 수 없는 자가 투표소에 들어간 경우에는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투표의 비밀 보장

- 투표의 비밀은 보장되어야 함.
- 선거인은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명을 누구에게도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진술할 의무가 없으며, 누구든지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까지 이를 질문하거나 그 진술을 요구불가

〈투표의 비밀보장 (공직선거법 제167조) 관련 벌칙〉

- (공직선거법 제241조)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하여 그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를 요구한 자와
- 투표결과를 예상하기 위하여 투표소로부터 50m 이내에서 질문하거나 투표마감 시각 전에 그 경위와 결과를 공표한 자는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행위 금지

-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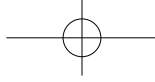
〈투표지 촬영행위 금지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 관련 벌칙〉

- (공직선거법 제256조)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자는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 할 수 있는 행위 : 투표소 밖에서 투표인증사진을 촬영하는 행위

※ 투표소 내 인증샷 촬영은 원칙적으로 금지



흥기 휴대금지와 투표소 내·외 소란 언동 금지

- 질서유지를 위해 투표소에 들어온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 외에는 누구든지 투표소 안에서 무기나 흥기 또는 폭발물을 소지 불가
- 누구든지 선거일에 완장·흉장 등의 착용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패용 불가

〈무기나 흥기 등의 휴대금지 (공직선거법 제165조) 관련 벌칙〉

- (공직선거법 제245조) 무기나 흥기 또는 폭발물, 그 밖의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을 지니고 투표소에 들어간 자는
 ...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음.

〈투표소 내외에서의 소란언동 금지 (공직선거법 제166조) 관련 벌칙〉

- (공직선거법 제256조) 투표소 안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자에 대한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의 제지명령에 불응한 자와
- 선거일에 완장·흉장 등의 착용,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한 자는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사위(이중)투표 방지

- 사전투표를 한 자는 선거일에 이중투표를 할 수 없고,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 위조·변조 등으로 투표할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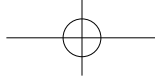
〈사위 투표 (공직선거법 제248조) 관련 벌칙〉

-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변조하여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투표마감 및 개표소 이송



1. 투표마감
2. 투표지 투입구 봉쇄, 특수봉인지 부착·서명(성명 기재)
3. 투표록 작성 및 마감 보고
4. 투표관계서류 봉투 봉합·봉인 등
5. 투표함 등 이송
6. 투표함 및 투표관계서류 인계
7. 어르신·장애인 등 선거인 투표편의 지원



1 투표마감 (18:00 정각)



마감준비 지시

- 투표관리관은 오후 5시 40분경 행정담당사무원(또는 직무대행자)에게 휴대전화기 등을 통해 시간을 확인 하도록 사전에 지시



투표마감시각 예고

- 투표관리관은 마감시각 10분 전(오후 5시 50분)에 행정 담당사무원(또는 직무대행자)에게 대기하고 있는 선거 인수를 확인하게 하여 오후 6시까지 투표를 마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교부할 대기번호표 준비를 지시
- 구두로 투표마감시각을 예고

투표마감시각 도착 선거인
대기번호

 중앙동 제1투표소 투표관리관

대기번호표 배부

- 오후 6시 직전까지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이 남아 있으면 번호표를 나누어 주고 모두 투표소 안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 오후 6시 정각에 투표소 출입문을 닫음

투표소 입구 통제

- 투표마감시각 후에는 선거인이 투표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조치

I. 투표일 전날에 해야 할 일

II. 투표개시 직전에 해야 할 일

III. 투표 진행 방법

IV. 투표마감 및 개표소 이동

부록

투표마감 시 유의사항

- 투표마감시각인 오후 6시는 법정시각이므로 휴대전화기 등에 의하여 이를 정확히 준수
- 투표마감 즉시 투표소 입구의 경비를 철저히 하고, 투표사무관계자 외에는 출입 금지
- 사실상 투표할 선거인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거나 투표함 이송에 있어 개표소와의 거리가 멀다는 이유 등으로 투표마감시각인 오후 6시 전에 미리 투표소를 닫는 일이 없도록 유의

마감시각 예고 예문

- **투표관리관** : 투표마감시각 10분 전입니다. 투표사무원께서는 투표마감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소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을 향하여) 앞으로 10분 후면 투표가 마감됩니다.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은 속히 들어오셔서 투표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투표개시 선언 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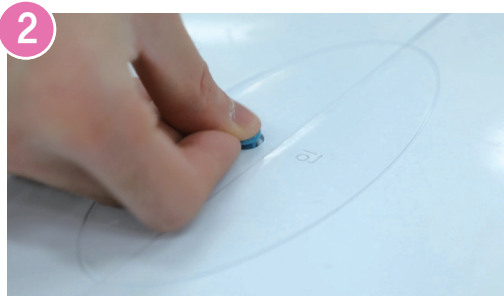
- **투표관리관** : (투표소에 남아있는 선거인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투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투표관리에 참여해 주신 투표사무원 및 참관인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2 투표지 투입구 봉쇄, 특수봉인지 부착·서명 (성명 기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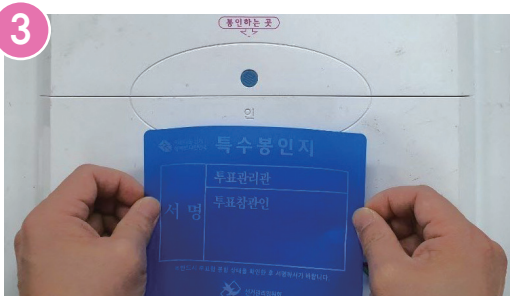
투표함 봉쇄, 특수봉인지 부착·서명(성명 기재) 요령



- 투표참관인을 모이게 한 다음, 투표함 투입구의 덮개를 밀어서 닫음



- 투표함 투입구 봉쇄 잠금핀을 끼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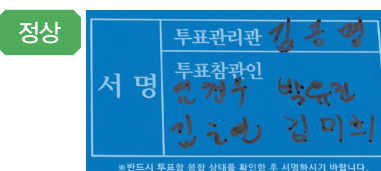
- 투표함의 투입구에 특수봉인지를 부착



- 투표관리관과 정당·후보자별로 신고한 투표참관인 각 1명이 특수봉인지에 서명 (성명기재)

※ 봉인지에 서명하도록 지정된 참관인은 투표록 <별지 제2호> 투표참관인 참관상황의 비교란에 “지정” 기재

< 특수봉인지 부착 시 주의사항 >



- ※ 특수봉인지는 부착 후 떼면 그 기능이 상실되어 재사용이 불가하므로 주의해서 부착
- ※ 투표관리관과 행정담당사무원(또는 직무대행자)은 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투표함 앞·뒤 자물쇠와 투입구의 봉쇄·봉인 이상유무를 최종 확인

I. 투표일 전날에 해야 할 일

II. 투표개시 직전에 해야 할 일

III. 투표 진행 방법

IV. 투표마감 및 개표소 이동

부록

3 투표록 작성 및 마감 보고

투표록의 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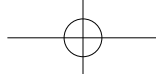
- 투표록은 투표관리과정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이므로 사실대로 정확하게 작성

투표록 작성방법

- 투표록은 행정담당사무원(또는 직무대행자)이 1부를 작성하여 투표관리관이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성과 이름을 정자로 적음) 또는 날인을 한 후 제출
- 행정담당사무원(또는 직무대행자)은 투표마감시각 전에 투표록의 기재사항 중 투표자수와 투표용지교부 및 잔여매수 등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을 사전에 작성
- 투표자수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 개표소에서 물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표자수는 정확히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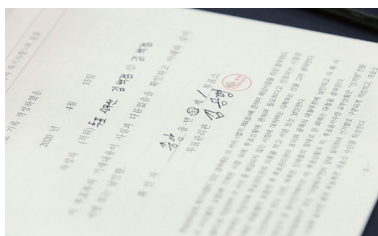
투표록 작성 시 유의사항

- 투표자수와 투표용지교부수의 일치여부 확인
 - 투표용지 교부 매수 불일치를 이유로 기표되지 않은 투표용지를 임의로 투표함에 투입(공직선거법 제249조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
- 투표용지의 일련번호와 매수를 철저히 확인하여 수령매수, 교부매수, 잔여투표용지를 정확하게 기재(서두르지 말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분하게 정확히 작성)
 - 오·훼손되어 맨 뒤로 돌려놓은 투표용지의 경우에는 투표자수 및 투표용지교부수에서 그 수만큼을 빼고 계산
 - 결정서를 지참하여 투표한 사람, 거소투표신고인 중 거소투표용지 미발송 또는 반송을 사유로 투표소에 와서 투표한 사람, 거소투표용지를 송부 받았으나 투표소에 와서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반납하고 투표한 사람의 수는 투표자수 및 투표용지교부수에 합산
- 투표록의 세부 작성요령은 본 매뉴얼 64쪽의 부록 [투표록 작성 예시] 참조



투표록 간인

- 투표관리관 도장으로 투표록 각 쪽 사이를 간인



투표관리관 서명·날인

- 투표록 확인란에 투표관리관이 성명을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성과 이름을 정자로 적음)을 하거나 도장을 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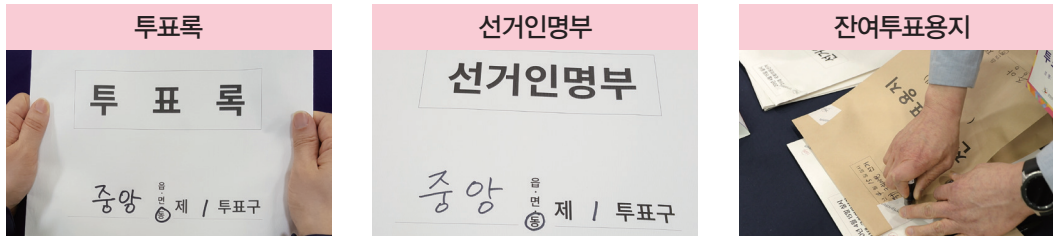


투표마감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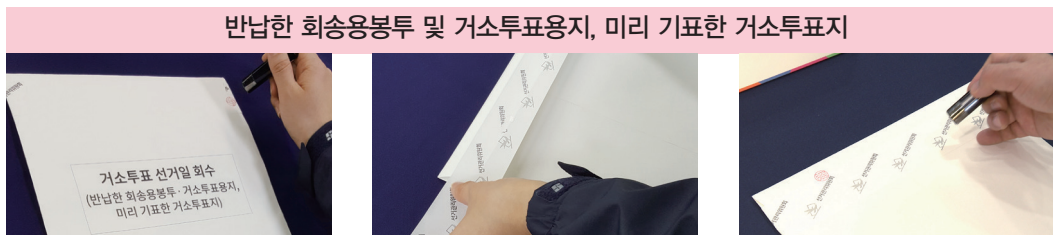
- 행정담당사무원(또는 직무대행자)은 투표록 작성 완료 후 투표록에 기재된 투표자수를 전화로 읍·면·동 위원회(간사 또는 서기)에 보고



4 투표관계서류 봉투 봉합 · 봉인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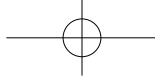
- 투표록, 선거인명부, 잔여투표용지를 각각의 봉투에 넣고 투입구를 테이프로 봉합한 후 투표관리관이 도장으로 봉인



- 거소투표신고인 중 회송용봉투 및 거소투표용지를 반납하고 투표한 사람과 미리 기표한 거소 투표지를 제출한 사람이 있는 때에는 반납 받은 투표용지 및 회송용봉투와 미리 기표한 거소투표지를 거소투표 선거일 회수봉투에 넣어 투입구를 테이프로 봉합한 후 투표관리관이 도장으로 봉인



- 일련번호지 투입함을 개봉하여 절취된 일련번호지를 일련번호지 봉투에 넣고 투입구를 테이프로 봉합한 후 투표관리관이 도장으로 봉인
- 봉투마다 겉면(표지)에 기재사항을 적은 후 선거가방 또는 투표소물품세트 상자에 넣어 개표소로 이송



5 투표함 등 이송

투표소 질서유지

- 투표관리관 및 행정담당사무원(또는 직무대행자)은 투표참관인, 호송경찰 등 이송차량 탑승자를 사전에 선정(특히, 투표참관인이 동반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 탑승자 선정
 - － 투표사무종사자 : 투표관리관, 행정담당사무원(또는 직무대행자)
 - － 호송경찰관 : 투표함 이송 노선별로 2명(이송차량이 2이상 노선으로 된 경우 이송 노선별 제일 첫 번째 투표소에서 대기)
- ※ 각 투표소별로 이송하는 경우 **오후 5시50분까지** 투표소 앞에 대기할 수 있도록 조치
- － 투표참관인 : 정당·후보자별 각 1명씩 지정하고 2명 이상을 다음과 같이 선정 후 투표록 차. 투표함 등 송부시 동반사항에 기재함.
 - 투표관리관은 투표마감시까지 투표함 등 개표소 이송 시 동반할 투표참관인을 정당·후보자별로 각 1명씩 지정한 후,
 - 지정된 투표참관인 중 탑승을 원하는 투표참관인 2명을 선정하되, 탑승을 희망하는 투표참관인이 2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송차량 여건을 감안하여 함께 탑승할 수 있음.
 - 투표참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동반을 거부한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투표록의 『투표진행 중의 특기사항』 10. 그 밖의 특기사항에 그 사유를 기록·관리

투표관계 서류 인계서 작성

- 행정담당사무원(또는 직무대행자)은 개표소에 인계할 투표함 및 투표관계 서류 인계서(1부)를 사전에 작성

이송품목 확인

- 투표관리관과 행정담당사무원(또는 직무대행자)은 『투표함 등의 인계할 품목 점검표』에 따라 투표함 등 이송품목을 확인·점검
- 투표관리관과 행정담당사무원(또는 직무대행자)은 투표함 앞·뒤 자물쇠와 투입구의 봉쇄·봉인 이상유무를 최종 확인

적재 및 탑승

- 이송차량이 도착하면 투표함과 투표관계서류를 담은 선거가방 또는 투표소 물품세트 상자를 이송차량에 적재하고 선정된 탑승자 전원이 탑승
- 투표관리관은 투표함과 선거가방 또는 투표소물품세트 상자를 빠뜨리지 않았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 이송차량을 출발

I. 투표일 전날에 해야 할 일

II. 투표개시 직전에 해야 할 일

III. 투표 진행 방법

IV. 투표마감 및 개표소 이송

부록

6 투표함 및 투표관계서류 인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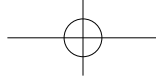


투표함 등 인계

- 개표소에 도착하면 투표관리관 및 행정담당사무원(또는 직무대행자)은 인계해야 할 투표함과 선거가방 또는 투표소물품세트 상자를 가지고 차량에서 하차
- 동승한 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개표소에 마련된 투표함 접수부에 투표함과 투표관계서류를 인계

투표함 등 이송 시 유의사항

- 투표함 등 이송 시 가급적 선정된 탑승자 전원이 같이 탈 수 있는 덩개가 있는 차량을 이용하여 동시에 개표소로 이송
 - ※ 이송차량으로 계약하지 아니한 투표사무원이나 일용인부의 자가용 등 임의의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직접 개표소로 옮기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
- 투표함 봉쇄 · 특수봉인지 부착 · 서명(성명기재) 여부와 투표록 등 관계서류의 봉인 여부를 확인
- 출발직전에 투표함 · 승차인원 확인, 투표관계서류 등의 점검을 실시하여 인계 서류나 물품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
- 투표함 이송차량에 동반할 투표참관인을 미리 선정하고 그 내용을 안내
- 투표함 이송 시 안전관리에 유의하고, 우천 시 투표소물품세트 상자에 들어있는 비닐을 이용하여 투표함 등 보호
- 투표함 이송차량 표지 부착 여부 확인



7 어르신 · 장애인 등 선거인 투표편의 지원

투표안내요원 (투표사무원)의 역할

- 투표안내요원(투표사무원)은 투표소 입구부터 출구까지 투표 전 과정에서 어르신 · 장애인 등 선거인에게 실질적인 투표안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투표안내요원 (투표사무원) 교육 · 운용

- 교육시기
 - － 선거일 전일까지
- 교육내용
 - － 투표안내요원(투표사무원)의 역할
 - － 어르신 · 장애인 등 선거인에 대한 안내 · 응대요령
 - － 근무시간 준수 및 성실안내 의무 등
- 교육방법
 - － 근무 개시 직전 투표편의 지원 물품의 사용법을 사전 교육
 - ※ 투표소 입구에 부착한 「어르신 · 장애인 투표편의 지원 안내문」을 활용
 - － 어르신 · 장애인 등 선거인을 위한 투표안내요령 등에 따라 선거인 안내 예절 교육
 - － 어르신 · 장애인 등 선거인에게는 ‘어르신 · 장애인용 물품세트’에 구비된 「투표가이드북」을 이용하여 안내할 수 있도록 교육

투표안내 요령

언어 사용 시 유의사항

- － 귀머거리, 병어리, 장님 등 장애인을 비하하는 용어 사용 금지

휠체어 이용 장애인에게 계단이나 경사로 이용 안내 시 유의사항

상체가 휠체어 등받이에 붙도록 함.

- － 휠체어를 밀 경우에는 상대방이 놀라거나 불편해 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의사 확인
- － 계단을 오를 때에는 먼저 휠체어를 뒤로 뉘어 앞바퀴가 들리도록 이동
- － 계단 또는 경사로를 내려올 때에는 앞으로 내려오는 것이 좋은지 또는 뒤로 내려오는 것이 좋은지 여부 확인

I. 투표일 전날에 해야 할 일

II. 투표개시 직전에 해야 할 일

III. 투표 진행 방법

IV. 투표마감 및 개표소 이동

부록

보행장애인에게 계단 또는 경사로 이용 안내 시 유의사항

- 보행장애인에게 도움이 필요한지 여부 확인
- 도움이 필요한 경우 보행장애인의 옆으로 걸으면서 팔을 뻗어 장애인이 팔을 잡아 의지하고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
- 더 큰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팔로 장애인의 허리를 부축하고 계단 또는 경사로를 오르내림

청각·언어장애인 안내 시 유의사항**정면에서 정확하게 말하고, 투표가이드북을 적극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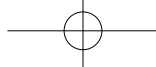
- 마주보는 자세에서 적당히 크고 일정한 소리로, 약간 느리게, 분명하고 바른 입모양으로 간략하게 안내
- 필요한 경우 메모지 또는 휴대전화에 글자를 적어 필답으로 안내
- 이야기를 들을 때는 얼굴, 눈을 바라보고 대화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며 중간 중간 고개를 끄덕여 경청·이해하고 있음을 알림

시각장애인을 안내할 때 유의사항**먼저 주변공간과 상황을 자세히 설명한 후 천천히 이동**

- 함께 걸을 때는 지팡이 반대쪽에 서서 투표안내요원(투표사무원)의 팔을 시각 장애인에게 내어주어 시각장애인이 투표안내요원(투표사무원)의 팔꿈치를 잡도록 하고 반 발짝 정도 앞 위치
- 계단·엘리베이터 또는 예외적인 곳에 접근할 때는 우선 멈춰 서서 위치(오른쪽, 왼쪽 등 방향 설명)·공간 구조와 이동상황(올라갑니다, 내려갑니다 등)을 설명
- 투표용지 교부 시 시각장애인의 손을 투표용지에 대어주는 등 시각장애인이 손으로 감지 할 수 있도록 안내

발달(지적·자폐성)장애인을 만났을 때 유의사항**주의 깊게 듣고 자세하게 안내**

- 발음이 불명확하고 단어선택이 미숙하더라도 끝까지 주의 깊게 듣고 의사를 파악
- 연령에 맞게 존칭어를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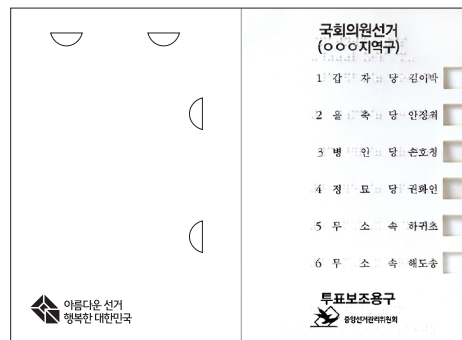


시각 및 신체장애 선거인 안내

- 시각장애인 등에게 점자를 읽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점자를 읽을 수 있는 시각장애인에게는 점자형 투표보조용구를 교부
- 상지절단, 근육마비 등 신체장애인에게 특수형 기표용구 필요 여부를 확인하여 교부
- 자신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1명도 가능) 또는 보인이 지명한 2명에게 투표를 보조받을 수 있음을 안내
 - ※ 금치산자 또는 피성년후견인도 시각 또는 신체장애가 있는 경우 투표 보조 가능
 - ※ 선거인이 지명한 사람이 없거나 1명(가족 제외)인 경우에는 투표참관인의 입회 하에 투표사무원 중에서 2명이 되도록 선정하여 투표보조(투표관리관은 그 사실을 투표록의 「투표진행 중의 특기사항」 6. 보조를 받아 투표를 한 사람란에 기재)
 - ※ 위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 기표소 안에 2명(미취학 어린이 제외) 이상이 동시에 출입 금지
 - ※ 투표록 「투표진행 중의 특기사항」 12. 어르신 · 장애인 등 투표편의 제공현황을 기재

시각장애인용 점자형 투표보조용구 사용방법

- ① 양면으로 접힌 투표보조용구에 투표용지의 가장자리 끝선 상단부분을 일치시켜 삽입함.
- ② 투표용지가 삽입된 투표보조용구를 시각장애선거인에게 전달하고 네모난 구멍에 기표용구를 이용하여 기표하도록 안내함.
- ③ 투표용지 기표란에 사퇴·사망·등록 무효로 표시된 경우에는 해당 후보자 기표란을 막음 스티커로 차단하고 선거인에게 교부함.
- ④ 기표가 끝난 투표지는 기표소에서 접어 투표함에 투입하게 함.
- ⑤ 사용한 투표보조용구는 「사용한 투표보조용구 회수」봉투에 넣어 읍·면·동위원회에 반납하고, 읍·면·동위원회에서 자체폐기 함.



I. 투표일 전날에 해야 할 일

II. 투표개시 직전에 해야 할 일

III. 투표 진행 방법

IV. 투표마감 및 개표소 이동

부록



특수형기표용구 사용요령



- 1 밴드형 기표용구 1개
- 2 마우스피스형 기표용구 2개
- 3 마우스피스형 교체형 2개
- 4 마우스피스형 바이트커버(비닐) 1팩(10장)

형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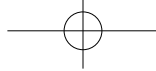


- ❶ 고정되어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로고 부분의 벨크로(찍찍이)를 떼어준다.
- ❷ 사진과 같이 벨크로 밴드 안쪽을 벌려 팔목에 넣을 수 있도록 준비한다.
- ❸ 투표사무원이 선거인의 팔에 밴드형 기표용구를 부착한다.
(밴드가 선거인의 팔에 고정되도록 밴드를 짝 조인다.)
- ❹ 투표사무원은 기표용구의 뚜껑을 제거하고 투표용지 방향으로 기표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 ❺ 선거인은 투표용지에 직각 방향으로 조준한 후 살짝 눌러 기표한다. ※ 사용 후 뚜껑을 닫는다.

마우스피스형



- ① 제품에서 비닐을 제거한다. 이때, 마우스피스 부분은 비닐을 다 벗기지 않고 남겨둔다.
- ② 기표용구의 뚜껑을 분리한다.
- ③ 선거인이 사용하기 직전, 마우스피스 부분에 남겨진 비닐을 완전히 제거한다. 마우스피스 교체 시에도 비닐이 씌워진 채로 교체하며, 선거인이 사용하기 직전에 비닐을 제거한다.
※ 마우스피스가 잘 고정되도록 기표용구를 최대한 깊이 밀어넣어 교체한다.
- ④ 투표사무원은 선거인이 입에 물고 기표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 ⑤ 선거인은 투표용지에 직각 방향으로 조준한 후 살짝 눌러 기표한다.
※ 사용 후 뚜껑을 닫는다.
※ 마우스피스 여분을 모두 사용 시 동봉된 화이트 커버를 사용한다.(한 번 사용한 화이트 커버는 버린다.)



어르신 · 장애인 등 선거인을 위한 임시기표소 설치

○ 설치요건

- 투표소에 어르신 · 장애인 등 선거인이 출입하기 어렵거나 1층 이외의 장소에 설치되어 선거인이 1층 또는 투표소 입구에서 투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1층 또는 투표소 입구에 별도의 기표소를 임시로 설치



※ 임시기표소는 소형 또는 대형기표대를 사용할 수 있으나, 휠체어 이용 장애인 등을 위한 임시기표소의 경우에는 반드시 대형 기표대를 사용

○ 투표진행절차

- 투표사무원과 투표참관인 2인 이상이 선거인이 제시한 신분증명서를 확인 후 「선거인 본인여부 확인서」를 작성하여 이를 제시하고 선거인이 성명을 기재하거나 도장 또는 손도장을 날인
- 투표는 반드시 투표참관인 입회 하에 본인 여부를 확인 후 투표용지를 교부

선거인 본인여부 확인서

☐ 선거인 현재사망

☐ 성 명 : ☐ 생년월일 : ☐ 성 별 : ☐ 주 소 :

상기자는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읍·면·동 제_____투표소 투표소 1층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할 본인임을
 확인합니다.

2020년 4월 15일 시 분

선 거 인	(서명 또는 인)
투표사무원	(서명 또는 인)
투표참관인	(서명 또는 인)
투표참관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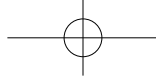
_____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관장

주 : 1. 투표사무원은 반드시 정당한 공인 확인 신분증명서에 의해 선거인 본인여부를 확인함.
 2. 주소는 선거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재함.

- 기표한 투표지는 공개되지 않도록 임시기표소 봉투에 넣게 한 후 선거인이 지정한 사람(지정한 사람이 없는 때에는 투표사무원을 말함)에게 전달
- 투표지를 전달받은 사람은 투표참관인과 동행하여 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하고, 투표관리관은 참관인 입회 하에 투표지만 투표함에 투입하되, 투입 과정에서 투표지가 공개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어르신 · 장애인 등 선거인이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한 상황을 투표록의 「투표 진행 중의 특기사항」 11. 임시기표소 이용자 현황란에 기록 ·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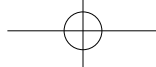
※ 투표관리관은 선거인명부 비고란에 “임시기표소 투표자”라고 기재한 후 “투표용지 수령인(가)란”에 해당 선거인의 성명을 기재하거나 도장을 찍고, 투표록에 「선거인 본인여부 확인서」를 편철하여 관리



부록



1. 투표사무관계자 업무분담표(예시)
2. 투표소 설비물품 점검표
3. 투표소 설비상황 점검표
4. 투표함 등의 인계할 품목 점검표
5. 투표록(작성예시)



1 투표사무관계자 업무분담표(예시)

I. 투표일 전날에 해야 할 일

II. 투표개시 직전에 해야 할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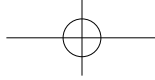
III. 투표 진행 방법

IV. 투표마감 및 개표소 이송

부록

부서명	담당	담당 업무 내용		
		투표개시 전	투표진행 중	투표종료 시
선거인명부 대조석	명부담당 사무원	• 선거인명부 대조석 확인 • 선거인명부 전체 페이지의 누락 여부 점검 (이상이 있는 경우 읍·면·동위원회 연락 및 보완)	• 선거인 본인여부 확인 • 선거인명부 성명 기재·도장 또는 손도장 날인 안내	• 투표자수 산정 • 투표용지교부수와 투표자수 대조 • 선거인명부 봉투 봉합
투표용지 교부석	투표 관리관	• 투표용지에 날인할 투표관리관 도장등록 • 투표함, 기표소 내외의 이상 유무 검사 • 투표함 뚜껑 앞·뒤쪽 봉쇄, 특수봉인지 부착 성명 기재 및 함께 성명 기재할 참관인 지정 • 투표사무관계자 교육 (투표사무원, 투표 참관인)	• 투표개시 선언, 투표 관리 감독, 질서 유지 • 투표용지에 도장 날인 • 일련번호지 절취 및 일련번호지 투입함에 투입 • 투표용지 교부 • 위급상황 발생시 경비 경찰 원조요구 및 지휘	• 투표마감 선언 • 투표함 투입구 봉쇄 및 특수봉인지 부착 성명 기재 및 함께 성명 기재 할 참관인 지정 • 투표관계서류봉투 봉합·봉인 • 투표록에 성명 기재 및 서명 또는 날인 후 각 쪽 사이에 간인 • 투표함 및 투표관계 서류 인계서 작성 • 투표함 개표소 이송 시 동반 참관인 지정
	투표용지 교부 보조사무원	• 해당 투표구의 투표용지 여부 및 수령 매수 일치 여부 확인 • 투표용지 일련번호 순으로 배치 • 일련번호지 투입함 비치·점검 • 투표함 및 기표소 내·외의 이상 유무 검사	• 일련번호지 절취 및 일련번호지 투입함에 투입 • 투표관리관 보조 (투표용지 도장 날인 및 교부 보조) • 투표용지교부수와 투표자수 확인	• 잔여투표용지 매수 계산 • 투표용지교부수 산정 • 일련번호지 봉투 투입·봉합 • 잔여투표용지 봉투 투입·봉합

부서명	담당	담당 업무 내용		
		투표개시 전	투표진행 중	투표종료 시
투표함석	투표사무원	- 투표함 및 기표소 내 · 외의 이상유무 검사 - 투표함 관리번호 홀로 그램스티커 부착 확인 - 투표함 뚜껑 앞 · 뒤쪽 봉쇄 및 특수봉인지 부착 보조	- 투표지를 투표함에 올바르게 투입하는지 확인 - 기표소 출입자 감시 - 기표소 이상유무 수시 확인 - 위급상황 발생시 투표함관리	투표함 투입구 봉쇄 및 특수봉인지 부착 보조
투표진행 기록석	행정담당 사무원	- 투표관리관의 투표개시 진행 보조 - 투표준비 상황 보고 - 투표사무관계자 출석 여부 확인 및 투표소 설비상황 확인 - 투표함 및 기표소 내 · 외의 이상 유무 검사 - 투표함 관리번호 투표록 기재	- 투표진행상황 보고 - 투표소 내 순회 감시 - 위급상황 발생 시 경찰 원조 요구 - 각종 보고 및 지시사항 전달 - 그 밖에 진행사항 기록 등 - 선거를 마친 선거인에게 투표확인증 교부	- 투표마감 사무 보조 - 투표관계서류 봉투 봉합 - 투표마감 보고, 투표록 작성 - 투표함 송부 및 물품 정리



I. 투표일 전날에 해야 할 일

II. 투표개시 직전에 해야 할 일

III. 투표 진행 방법

IV. 투표마감 및 개표소 이동

부록

부서명	담당	담당 업무 내용		
		투표개시 전	투표진행 중	투표종료 시
투표 안내석	투표사무원	임시기표소, 임시경사로 등 어르신·장애인 등 투표편의 제공 준비상황 확인	- 어르신·장애인 등에 대하여 투표소 입구부터 출구까지 투표 전과정 실질적인 투표편의 지원 - 투표소 입구 질서유지 - 위급상황 발생 시 투표 관리관 보고 및 경찰 원조요구 - 임시기표소 설치·운영	- 투표마감시각 대기 선거인 파악 - 투표관리관의 지시에 따라 번호표 교부
투표 참관인석	투표참관인	- 투표함 및 기표소 내·외의 이상유무 검사 참관 - 투표함 뚜껑 앞·뒤쪽 봉쇄·봉인과정 참관 및 특수봉인지 서명 - 투표소 설비상황 시정요구	투표진행 상황 참관	- 투표함 투입구 봉쇄 참관·특수봉인지 서명 및 투표관계서류 봉투 봉함·봉인 참관 - 투표함의 개표소 송부 과정에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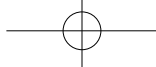
2 투표소 설비물품 점검표

기표대, 투표함

구분	품명	수량	점검 결과	
			O	X
기표대	기표대(대형기표대 1개 포함)	설치수		
투표함	투표함	설치수		

투표소물품세트 품목

구분	품명		수량	점검 결과	
				O	X
매뉴얼	투표관리매뉴얼		2~3권		
투표관리물품	기표용구(예비용 별도)		기표소수		
	스탬프(명부대조 및 도장날인용)		2개		
	일련번호지 투입함		1개		
	투표함 특수봉인지		소요량		
	투표함 자물쇠 · 잠금핀		소요량		
	점자형 투표보조용구		소요량		
	특수형 기표용구(밴드형, 마우스피스형)		1세트		
	투표참여 불편 선거인을 위한 「투표가이드북」		1부		
	공개된 투표지 고무인		1개		
	투표안내요원(투표사무원) 조끼		2개		
투표소 표찰	투표소 위치 안내(화살표)		10개		
	투표소 간판(2종)		각 1개		
	투표절차 등 안내문		2개		
	투표진행방향 표시	벽면 부착용	1개		
		바닥 부착용	8개		
		투표함 투입구 표시	2개		



I. 투표일 전날에 해야 할 일

II. 투표개시 직전에 해야 할 일

III. 투표 진행 방법

IV. 투표마감 및 개표소 이송

부록

구분	품명	수량	점검 결과	
			O	X
투표소 출입자 표지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투표참관인, 목걸이줄	적정수		
부서표찰	투표안내석	1개		
	본인확인 하는 곳(선거인명부 대조석)	2개		
	투표용지 받는 곳(투표용지 교부석)	2개		
	투표진행 기록석	1개		
	투표참관인석(2종)	각 1개		
투표관계 서류투입 봉투	투입봉투(투표록 1개, 선거인명부 2개) 거소투표 선거일 회수(반납한 회송용봉투 · 거소투표용지, 미리 기표한 거소투표지) 2개, 잔여투표용지 4개, 일련번호지 1개	각각		
	훼손된 투표용지 등 보관봉투	1개		
	임시기표소 봉투	2개		
	투표관리관 도장 및 공개된 투표지 고무인 보관 봉투	1개		
	사용한 투표보조용구 회수봉투	1개		
서식 등 인쇄물	투표용지	매		
	선거인명부(색인부 포함)	1부/분철수		
	투표록	3매		
	참관인 교체신고서	10매		
	각종 공고 안내문(해당 시) - 사퇴 · 사망 · 등록무효 등 공고문 사본	매		
	투표관리관 도장표지(스티커)	4매		
	거소투표용지 미발송 · 반송자 명단(해당 시)	1부		
	투표함 및 투표관계서류 인계서	2부		
	기표용구 시험용지(A4)	1권(5매)		
	투표지 촬영사실 확인서	10매		
	선거인 본인여부 확인서	10매		
	대기번호표	1권(50매)		
	투표확인증	100매		
	투표함 이송차량 표지	1매		

읍·면·동위원회 자체보완 품목

구분	품명	수량	점검 결과	
			O	X
책상 (의자)	선거인명부 대조석, 투표관리관석, 투표진행기록석, 투표함석, 투표용지교부 보조사무원석, 투표참관인석, 투표안내요원(투표사무원)석	소요량		
계산기	투표자수 등 계산용	1개		
휴대전화기	투표시작, 마감시각 확인용	1대		
사무용품	휴지 또는 면수건, 가위, 필기구, 자 등	적정수		
소화기	비상용	1대		
음료대	투표사무관계자용	1조		

3 투표소 설비상황 점검표

구분	품명		점검 결과	
			O	X
각종 게시물 첨부	투표소 위치안내, 투표소 간판			
	투표절차 등 안내문			
	후보자 사퇴, 사망, 등록무효 안내문(해당 시)			
	경력 등 허위 사실이나 사생활 비방으로 인한 고발사실에 대한 공고문 사본(해당 시)			
투표 진행부서 설비	투표안내요원석 (투표사무원석)	선거인명부 색인부		
	본인확인 하는 곳 (선거인명부 대조석)	선거인명부		
		스탬프(명부대조용), 사인펜		
		휴지 또는 물티슈		
		선거인명부대조용 자		
	투표용지 받는 곳 (투표용지 교부석)	투표용지 관리상자		
		스탬프(투표관리관 도장날인용) ※ 민주당장형인 경우에는 제외		
		가위(일련번호 절취용) 또는 칼, 자		
		점자형 투표보조용구		
	투표참관인석			

I. 투표일 전날에 해야 할 일

II. 투표개시 직전에 해야 할 일

III. 투표 진행 방법

IV. 투표마감 및 개표소 이동

부록

구분	품명	점검 결과	
		O	X
기표소	기표용구(기표용구 사용 안내문)		
	설비 위치(투표의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설비) ※ CCTV 설치 위치 등 확인		
	기표소 뒷면에 창문은 없는지		
	기표소 내부에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았는지		
투표진행 기록석	투표참관인 신고서 및 표지(서식)		
	투표관리매뉴얼, 리플릿, 지침 등		
	투표관계서류 투입봉투, 공개된 투표지 고무인		
	휴대전화기, 투표소물품세트, 예비용 기표용구, 사무용품 등		
	어르신·장애인 등 선거인용 물품세트, 사용한 투표보조용구 회수봉투		
시설점검	전화기, 전기시설의 이상 유무		
	투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표시물의 게시 여부		
	소화기 등 비치 여부		
	화재 등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비상구 등 비상대피로 확보 여부		

4 투표함 등의 인계할 품목 점검표 (투표 종료 후)

구분	품명	점검 결과	
		O	X
투표함	투표함 뚜껑 앞·뒤쪽 일회용 자물쇠 부분 봉쇄와 투표관리관 및 투표참관인 성명 기재 여부		
	투표함 투입구에 봉쇄잠금핀을 끼우고 특수봉인지를 부착 후 투표관리관 및 투표참관인 성명 기재 여부		
	투표함 표지에 투표구 명칭 기재 여부		
투표록	끝부분에 기재하는 투표관리관 성명은 자필로 기재하고 날인 또는 서명 여부		
	투표록 각 면 사이에 투표관리관의 간인 여부		
	오자 등 정정부분 여백에 정정 숫자 기재 및 투표관리관의 도장 날인 여부		
	작성된 투표록을 투표록봉투에 넣고 봉투표면에 투표소명과 투입된 내용을 기록한 후 봉합·봉인 여부		
잔여 투표용지	정확한 매수확인 후 잔여투표용지 봉투에 넣고 봉투 표면에 투표구명과 매수 등 기록 여부		
	봉투의 봉합·봉인 여부		
절취된 일련번호지	절취된 일련번호지를 봉투에 넣고 봉투표면에 투표구명 등 기록 여부		
	봉투의 봉합·봉인 여부		
선거인명부 (투표 시 사용한 명부)	선거인명부를 봉투에 넣고 봉합·봉인 여부		
	봉투 표면에 투표구명과 투입된 내용 기록 여부		
반납한 회송용봉투 및 거소투표용지, 미리 기표한 거소투표지 (해당 시)	거소투표 선거일 회수봉투 표면에 투표구명 등 기록 여부		
	봉투의 봉합·봉인 여부		
선거가방 또는 투표소 물품세트 상자	투표관계서류 봉투 누락 여부 등		

I. 투표일 전날에 해야 할 일

II. 투표개시 직전에 해야 할 일

III. 투표 진행 방법

IV. 투표마감 및 개표소 이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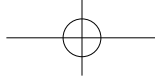
부록

[작성예시]

투표록



중앙동 제1투표소



1. 투표용지 보관·관리상황

(1) 보관기간	2020년 4월 14일 11시 30분 ~ 2020년 4월 15일 05시 00분					
(2) 보관장소	라천 (구· 시)·군) 관악상길 58 (장소 : 중앙동 주민센터)					
(3) 수령·보관 시 참여한 위원· 투표관리관	직위	성명	비고	직위	성명	비고
	위원	이○○		투표관리관	김○○	
		조○○				

2. 투표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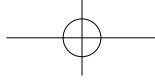
가. 투표소 설치장소	라천 (구· <u>시</u>)·군) 희망4길 33 (장소 : 라천중학교)			
나. 투표소 운영시간	개시시각	2020년 4월 15일 06시 00분		
	종료시각	2020년 4월 15일 18시 00분		
다. 투표관리관 및 투표사무원 근무상황	별지 제1호 <투표관리관 및 투표사무원 근무상황>과 같음.			
라. 투표참관인 참관 상황	별지 제2호 <투표참관인 참관상황>과 같음.			
마. 투표관리관사인의 인영등록	별지 제3호 <투표관리관 사인 날인 인영대장>과 같음.			
바. 투표개시 시 투표함 및 기표소 안팎의 검사와 투표함의 봉쇄·봉인에 참여한 사람	검사와 봉쇄·봉인에 참여한 사람의 성명			
	투표관리관	참관인	선거인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성명



(중앙 읍 · 면 · 동 제 1 투표소)

사. 투표함 수 (투표함 관리번호)	1개 (라천시 - 1001호)								
아. 투표 상황	선거명	선거인명부 등 재자수 (사전투표자수, 거소·선상투표신고 인수 및 국외부재자 신고인수 제외) (가)	투표자 수					비 고	
			선거인 명부 등재자 (1)	거소투표 용지 미발송· 반송자 (2)	결정서 지참자 (3)	거소투표 용지와 회송용 봉투 반납자 (4)	귀국 투표자 (5)		계 (나) (1+2+ 3+4+5)
	지역구국회의원	3,715	2,900	1	1	1	1	2,904	
	비례대표국회의원	3,718	2,901	1	1	2	1	2,906	
자. 투표 용지 수령· 교부 상황	선거명	수령매수 (다)	교부매수 (라)	잔여매수 (마=다-라)					
				매수(마)	투표용지 일련번호				
	지역구국회의원	3,700	2,904	796	(NO. 1,201, < 3,906 ~ 4,700)				
비례대표국회의원	3,700	2,906	794	(NO. 3,907 ~ NO 4,700)					
차.투표함 등 송부 시 동반상황	투표관리관·사무원		참관인						
	직위	성명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김○○ 이○○	김○○ 이○○ 최○○ 백○○						
카. 특기사항	별지 제4호<투표진행 중의 특기사항>과 같음.								

오·혜손으로
미교부
투표용지



이 투표록은 사실대로 기록·작성하였음.

2020 년 4 월 15 일

작성자 (직위) 투표사무원 이○○ (인)

이 투표록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서명 또는 날인함.

확인자 중앙 읍·면·동 제 1 투표소

투표관리관 김○○ (인)

- 주 : 1. 투표관리상의 특기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 서식의 <별지 제4호>에 준하여 해당사항을 작성·첨부한다.
 2. 이 서식(별지 포함)에 기재된 사항 외에 투표상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별지>로 작성하며 이 서식 중 해당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삭제하는 선을 그어 생각한다.
 3. 끝부분에는 작성자와 투표관리관의 이름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다.
 4. 투표록은 대철(별지 포함)한 후 투표관리관이 표지와 끝쪽의 대철부분에 날인하고 각 쪽 사이 간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책된 인쇄물의 형태로 된 때에는 대철을 생각한다.
 5. 국회의원선거 및 동시선거에서는 아. 투표상황과 자. 투표용지수령·교부상황은 “선거명” 칸을 “선거인 명부등재자수” 또는 “수령매수”칸 의 앞에 설치하여 선거별로 구분되게 작성하고, 개표소를 2개소 이상에 설치한 때의 투표록은 개표소 수만큼 작성한다.

〈별지 제1호〉

투표관리관 및 투표사무원 근무상황

소속	직위	성명	참석 및 근무시간 (부터 까지)	비고
××주면센터	투표관리관	김○○	05:00 ~ 18:25	
○○학교	투표사무원	정○○	"	
"	"	송○○	"	
××주면센터	"	김○○	"	
"	"	한○○	"	
"	"	장○○	"	
"	"	이○○	"	
일반인	"	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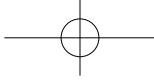
주 : “소속”칸은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은 소속기관명을 적고, 그밖의 사람은 “일반인”으로 적으며,
“직위”칸은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으로 적는다.

〈별지 제2호〉

투표참관인 참관상황

소속정당명	후보자성명	참관인성명	참관시간 (부터 까지)	비고
개당	김○○	김○○	05:30 ~ 18:25	지정
		최○○	05:20 ~ 18:20	
을당	이○○	이○○	05:30 ~ 18:20	지정
		김○○	05:20 ~ 18:25	
병당	최○○	최○○	05:30 ~ 18:25	지정
		황○○	05:25 ~ 18:25	
무소속	박○○	백○○	05:30 ~ 18:25	지정
		박○○	05:30 ~ 11:50	
		나○○	11:50 ~ 18:25	박○○과 교체 (11:50)

- 주 : 1. 참관도중에 교체된 참관인의 경우에는 “참관시간”칸에 교체시간을 명시한다.
2. 교대참관을 하는 경우에는 “참관시간”칸에 구분선을 그어 그 참관시간을 적는다.
3. “봉인지에 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지정된 참관인”은 “비고”칸에 “지정”이라고 적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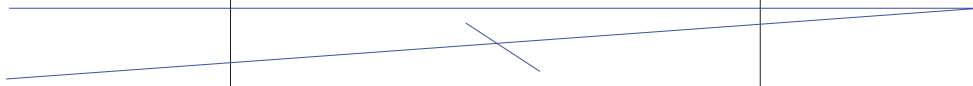
〈별지 제3호〉

투표관리관 사인 날인 인영대장

1. 투표관리관 사인의 인영

성명	인영	등록일시
김○○		2020. 4. 15. 05:40

2. 투표관리관의 유고로 인한 투표사무원의 사인의 인영

성명	인영	등록일시
		

가. 투표관리관 유고사유 :

나. 투표사무원 날인시간 : 일 시 분부터 시 분까지

다. 투표사무원이 날인한 투표용지 매수 : 매(No. ~ No.)

주 : 1. 등록된 인장에는 등록된 인장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2. 동시선거에서 투표관리관의 사인을 2개 이상 조각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인영”칸을 제1호와 제2호로 구분하여 등록하고, 투표관리관의 유고로 인한 투표사무원의 사인의 “인영”칸은 작성하지 아니한다.

I. 투표일 전날에 해야 할 일

II. 투표개시 직전에 해야 할 일

III. 투표 진행 방법

IV. 투표마감 및 개표소 이동

부록



〈별지 제4호〉

투표진행 중의 특기사항

1. 투표소설비·투표진행 등에 관한 시정요구 및 조치상황

일시	시정요구자		시정요구사항	조치사항	비고
	신분	성명			
2020. 4. 15. 13:00	투표 참관인	최○○	참관인석 위치조정	이동설치	

2. 선거인명부 등재결정서에 의하여 투표한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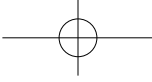
소속	주소	결정서요지	비고
박○○	관악산길 58	정당한 선거권자의 선거인명부 누락	

3. 거소투표용지 미발송·반송자 및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고 투표한 사람

선거인명부등재번호	성명	비고
197	조 ○ ○	거소투표용지 미발송자
1,256	백 ○ ○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고 투표
2,015	김 ○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거소투표용지는 반납하지 아니하여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를 교부하지 아니함.

4. 귀국투표자(선상투표자, 국외부재자신고인, 재외선거인)

선거인명부등재번호	성명	비고
3,715	김 ○ ○	



5.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었으나 선거권이 없음이 확인되어 투표가 거부된 사람, 투표용지 수령 후 투표를 거부하여 투표용지를 회수한 사람, 투표용지를 재교부 받아 투표를 한 사람

선거인명부등재번호	성명	사유	비고
254	최○○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으나 선거권이 없음이 확인되어 투표용지 재교부	

6. 보조를 받아 투표를 한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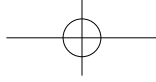
선거인		보조사유	보조자		비고
선거인명부등재번호	성명		성명	선거인과의 관계	
614	김○○	시각장애	김○○	자녀	

7. 공개된 투표지 처리상황

공개한 선거인		공개된 투표지 표시를 하는데 참관을 거부한 참관인		비고
선거인명부등재번호	성명	성명	사유	
372	정○○			

8. 투표함의 봉쇄·봉인상황

봉쇄·봉인에 참관을 거부한 참관인	
성명	사유
봉인지에 날인 또는 서명을 거부한 참관인	
성명	사유



12. 어르신 · 장애인 등 투표편의 제공현황

수화통역	수화통역사 배치여부	☒ 배치 / ☐ 미배치
	수화통역사 제공횟수	3 회
특수형 기표용구	밴드형 기표용구 제공횟수	4 회
	마우스피스형 기표용구 제공횟수	2 회

※ 수화통역사를 배치하였으나 수화통역을 미제공한 경우 0회로 작성
(영상통화를 통한 수화통역 횟수는 포함하지 않음)



2020. 4. 15. 실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관리매뉴얼

발 행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기도 과천시 홍춘말로 44
Tel. 02-503-2093 www.nec.go.kr
